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0051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234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005177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임대섭

피 고 B

변론종결 2021. 2. 18.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5.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와 이행보증계약(피보험자 E)을 체결하였는데 C은 D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2011. 3. 28.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같은 해 4. 15 위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E에게 14,472,666원을 지급하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6101로 D과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13. “C과 D은 연대하여 14,765,542원 및 그중 14,479,912원에 대하여 2011.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의 기초가 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F은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C, G, 피고(상속지분 각 1/3)를 두고 2016. 5. 4.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와 C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 1/2(나머지 1/2 지분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1. 23. 피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07,600,000원인 2015. 11.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4. 17.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18.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발생해 있었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2016년 이전부터 대략 9,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C은 2011년 이후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I은행 계좌에서 2015. 3. 4.부터 2016. 12. 27.까지 75,792,000원(= 30,630,000원 + 45,162,000원)이 출금되고, 36,405,095원(= 5,130,000원 + 31,275,095원)이 입금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

(1)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후에 위 근저당권이

2017. 4. 18.자로 말소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결과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미달하는 채무자의 상속분이므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도 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20,000,000원 정도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위 말소 당시를 기준으로 15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 1/3에 따른 공동담보가액은 27,000,000원[= 162,000,000원(= 320,000,000원 - 158,000,000원) × 1/2 지분 × 상속지분 1/3]이나,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은 30,653,160원(= 14,765,542원 + 14,479,912원 × 2011. 8. 8.부터 2019. 12. 23.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이므로, 원고는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27,00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2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별지

부동산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동

1층 575.454㎡, 2층 564.654㎡, 3층 564.654㎡, 4층 564.654㎡, 5층
 564.654㎡, 6층 564.654㎡, 7층 564.654㎡, 8층 564.654㎡, 9층 564.654㎡,
 10층 564.654㎡, 11층 564.654㎡, 12층 564.65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김포시 대 2804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제9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25.05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8042분의 71.1424

1) 2016. 11. 23.은 2016. 5. 4.의 오기로 보인다(2016. 11. 23.은 등기 접수일임).